

중국 외국인투자법 관련 법규
中国外商投资法相关法规

중국한국상회

中国韩国商会

2020년 1월

목 차

1.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2.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
3.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

目 录

- 1、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
- 2、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实施条例
- 3、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若干问题的解释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2019년 3월 15일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차 회의에서 통과)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투자촉진

제3장 투자보호

제4장 투자관리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촉진시키고 외국인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인투자관리를 규율하며 전면적 개방 신구도를 조성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헌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이하 중국 경내라 함)에서 이뤄지는 외국인투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외국인투자자라 함은 외국의 자연인, 기업 및 기타 조직(이하 외국인투자자라 함)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국 경내에서 진행하는 투자 활동을 지칭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 (1) 외국인투자자가 단독으로 또는 기타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 경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 (2)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경내 기업의 주식, 지분, 재산 또는 기타 유사한 권익을 취득하는 경우
- (3) 외국인투자자가 단독으로 또는 기타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 경내에 투자하여 프로젝트를 신축하는 경우

(4)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방식의 투자

이 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자가 투자하여 중국 법률에 따라 중국 경내에서 등기·등록 절차를 거쳐 설립한 기업을 지칭한다.

제3조 국가는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고수하고 외국인투자자가 법에 의거하여 중국 경내에 투자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는 고수준의 투자 자유화, 원활화 정책을 시행하고 외국인투자 촉진 매커니즘을 구축 및 보강하며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공평경쟁의 시장환경과 조성한다.

제4조 국가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설립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시행한다.

전 항에서의 국민대우라 함은 투자진입단계에 외국인투자자 및 그 투자에 부여하는, 본국 투자자 및 그 투자보다 낮지 아니한 대우를 지칭하며, 네거티브 리스트라 함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특정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외국인투자진입 특별 관리조치를 지칭한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국무원이 발표하거나 국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발표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에 외국인투자자의 진입대우에 대하여 더 우대적인 혜택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5조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경내 투자, 수익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6조 중국 경내에서 투자활동을 하는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중국의 국가안전을 침해하거나 사회공공이익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투자주관부서는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 보호 및 관리 업무를 전개한다. 국무원 유관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 촉진,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유관부서는 법률, 법규와 본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직책 및 업무분장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 보호 및 관리 업무를 전개한다.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은 법에 의거하여 공회를 설립하고 공회 활동을 전개하며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본 기업의 공회에 필요한 활동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2 장 투자촉진

제9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국가의 제반 기업발전 지원 정책을 동등하게 적용한다.

제10조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법률, 법규, 규장(規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적당한 방식을 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규범성 문건, 재판문서는 법에 의거하여 적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국가는 외국인투자 서비스 체계를 구축 및 보강하여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법률법규, 정책조치, 투자프로젝트 정보 등에 대한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2조 국가는 기타 국가와 지역, 국제조직과의 다자간 투자촉진 협력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투자분야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제13조 국가는 필요에 따라 특수 경제구역을 설립하거나 일부지역에서 외국인투자 시범적 정책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키고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제14조 국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수요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이 특정 산업, 분야, 지역에 투자하도록 권장하고 안내한다.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우대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에 따라 표준 제정사업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며, 표준제정에서의 정보 공개와 사회 감독을 강화한다.

국가에서 제정한 강제성 표준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평등하게 적용된다.

제16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법적인 공평경쟁을 통해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 정부조달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경내 생산제품,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등하게 대우한다.

제1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주식, 사채 등 증권을 발행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18조 현급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권한 내에서 외국인투자 촉진과 편리화 정책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제19조 각급 인민정부와 기타 유관부서는 편리, 고효율, 투명의 원칙에 따라 업무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효율을 제고시키고 정부서비스를 최적화 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서비스 수준을 진일보 제고하여야 한다.

유관 주관부서는 외국인투자 지침을 작성 공포하여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서비스와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3 장 투자보호

제20조 국가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징수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는 사회공공이익의 수요와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징수 또는 징용을 실시할 수 있다. 징수, 징용은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적시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출자, 이윤, 자본수익, 자산처분 소득, 지적재산권 사용료, 합법적으로 취득한 보상금 또는 배상금, 청산소득 등은 법에 의거하여 위안화 또는 외화로 자유롭게 입금하거나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제22조 국가는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 권리자와 관련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국가는 외국인투자 과정에서 자발적 원칙과 상업규칙에 기한 기술협력을 권장한다. 기술협력의 조건은 투자 각측이 공평원칙을 준수하는 평등 협상을 통해 확정하며,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은 행정수단을 이용하여 기술이전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에서 알게된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업비밀에 대한 법적 비밀고수 의무를 지며,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불법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각급 인민정부 및 그 유관부서는 외국인투자 관련 규범성 문건을 제정함에 있어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의거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축소, 손상시키거나 그 의무를 확대시켜서는 아니되며, 시장진입과 퇴출 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을 간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정책 약속과 법에 의거하여 체결한 제반 계약을 엄격히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의 수요로 인해 정책 약속, 계약상의 약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엄격히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그로 인

해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초래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6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서 업무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반영한 문제를 지체 없이 처리함으로써 관련 정책조치를 조율 및 보강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투서업무 메커니즘을 통해 조율, 해결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투서업무 메커니즘을 통해 조율, 해결하는 외에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상회, 협회를 설립하거나 상회, 협회에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상회, 협회는 법률, 법규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제 4 장 투자관리

제28조 외국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상의 투자 금지분야에 투자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상의 투자 제한분야에 투자함에 있어 네거티브 리스트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수록되지 아니한 분야는 내외자 일치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제29조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의 심사비준, 비안(備案)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0조 외국인투자자가 법에 의거하여 허가가 필요한 업종,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관련 허가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유관 주관부서는 내외자 일치의 조건과 절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허가 신청을 심사하여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형태, 조직기구 및 활동 준칙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법> 등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경영활동은 법률, 행정법규의 노동보호, 사회보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 회계, 외환 등 사항을 처리하고 유관 주관부서에서 법적으로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경내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경영자집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집중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국가는 외국인투자정보 보고제도를 수립한다.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등기 시스템 및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상무주관부서에 투자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정보 보고의 내용과 범위는 확실한 필요성 원칙에 따라 확정하여야 하며, 부서간 정보공유를 통해 획득이 가능한 투자정보는 중복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 국가는 외국인투자 안전심사 제도를 수립하여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안전심사를 실시한다.
법에 의거하여 내린 안전심사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제 5 장 법률책임

제36조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상의 투자 금지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유관 주관부서는 투자활동 중단과 더불어 기한부 주식, 자산을 처분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투자 실시 전의 상태로 회복할 것을 명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외국인투자자의 투자활동이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상의 제한적 특별관리조치에 위배되는 경우 유관 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특별관리조치의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인투자자의 투자활동이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 두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외에 법에 따라 상응한 법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7조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외국인투자정보

보고제도의 요구에 따라 투자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무 주관부서는 기한부시정하도록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킨다.

제38조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의 법률,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조사 처리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신용정보시스템에 기록한다.

제39조 행정기관 공무원이 외국인투자 촉진, 보호 및 관리업무 중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리를 도모한 경우, 또는 그 직무 이행중에 알게된 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분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장 부 칙

제40조 여하한 국가 또는 지역이 투자와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차별시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상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경내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금융업종에 대한 투자 또는 증권시장,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관리는 국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42조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이 법 시행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 시행 후 5년간 기존의 기업조직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

국무원령 제 723 호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가 2019 년 12 월 12 일 국무원 제 74 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2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리커창(李克强)

2019 년 12 월 26 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이하 ‘외국인투자법’으로 약칭)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외국인투자를 권장·촉진하고 외국인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외국인투자 관리를 규율하고 외국인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보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한다.

제3조 외국인투자법 제 2 조 제 2 항 제(1)호, 제(3)호에서 기타 투자자라 함은 중국의 자연인을 포함한다.

제4조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이하 ‘네거티브리스트’로 약칭)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등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되 국무원이 발표하거나 국무원의 비준을 득한 후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상무주관부서가 발표한다.

국가는 대외개방 진일보 확대 수요와 경제·사회 발전 수요에 따라 네거티브리스트를 적시에 조정한다. 네거티브리스트 조정 절차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투자주관부서 및 기타 유관부서는 직책 및 업무분장에 따라 긴밀하게 협조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공동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보호 및 관리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외국인투자 촉진·보호 및 관리 사업에 대한 조직·지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유관부서가 법률·법규 및 직책·업무분장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보호 및 관리 사업을 전개하도록 지원하고 독촉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 촉진·보호 및 관리 사업의 중대한 문제를 지체없이 조율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 2 장 투자 촉진

제6조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정부자금 배정, 토지 공급, 세금 감면, 자격 허가, 표준 제정, 프로젝트 신고, 인력자원 정책 등 면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내자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정부와 그 유관부서가 제정한 기업성장 지원 정책은 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기업의 신청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신청 조건, 절차, 기한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심사를 함에 있어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기업과 내자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7조 외국인투자 관련 행정법규·규장·규범성문건을 제정하거나 정부와 그 유관부서가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지방성법규 기안 시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서면의견 수렴, 간담회·논증회·청문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인투자기업과 유관 상회·협회 등 다방면의 의견 및 건의를 청취하여야 한다.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중대한 권리·의무와 연관된 문제에 관한 의견 및 건의는 적절한 방식으로 채택 상황을 피드백 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관련 규범성문건은 법에 의거하여 적시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되지 아니한 규범성문건은 행정관리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경영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규범성문건은 실제와 결부시켜 공포시점부터 시행시점까지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 주도, 다방면 참여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투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완비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정부 웹사이트, 전국 일체화 온라인 정부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법규·규장·규범성문건·정책조치와 투자 프로젝트 정보를 집중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하여 홍보·해설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상대로 자문·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인투자법 제 13 조에서 특수경제구역이라 함은 국가의 승인을 거쳐 설치된 보다 강력한 대외개방 정책 조치를 시행하는 특정 구역을 지칭한다.

국가가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외국인투자 실험성 정책 조치가 실천을 통해 그 타당성이 확인된 경우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그 시행 범위를 기타 지역 또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다.

제11조 국가는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의 수요에 따라 외국인투자 권장형 산업 목록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권장하고 유도하는 특정 업종·분야·지역을 명시한다.

외국인투자 권장형 산업 목록은 국무원 투자주관부서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등 유관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며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상무주관부서가 발표한다.

제12조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재정·조세·금융·토지이용 등 방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취득한 투자수익으로 중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혜택을 누린다.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내자기업과 평등하게 국가표준·업계표준·지방표준 및 단체표준의 제개정 사업에 참여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또는 기타 기업과 연합하여 기업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표준화행정주관부서와 유관 행정주관부서에 표준 입안(立項)을 건의할 수 있으며 표준 입안(立項), 기안, 기술심사 및 표준 실시 정보 피드백, 평가 등 과정에서 의견 및 건의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표준 기안, 기술심사 관련 업무와 표준의 외국어 번역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표준화행정주관부서와 유관 행정주관부서는 관련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완비하고 표준 제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표준 제개정 전 과정의 정보 공개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 국가가 제정한 강제성 표준은 외국인투자기업과 내자기업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강제성 표준보다 엄격한 기술요구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본 지역 및 본 업종의 정부조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부조달의 구매자·구매대리기구는 정부조달 정보 발표, 공급원 조건 확정 및 자격심사, 입찰평가 기준 등 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서는 아니되며 소유제 형태, 조직형태, 지분구조, 투자자 국적, 제품 또는 서비스의 브랜드 및 기타 불합리적인 조건으로 공급원을 한정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서비스와 내자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이하 '정부조달법'으로 약칭)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매자·구매대리기구에 정부조달 활동 사항에 관한 질문·질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조달감독관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구매자·구매대리기구·정부조달감독관리부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 답변을 하거나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7조 정부조달감독관리부서와 기타 유관부서는 정부조달 활동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등 법률·법규 위반 행위를 법에 의거하여 바로잡고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중국 내 또는 해외에서의 주식·회사채 등 증권 공개발행, 기타 용자수단의 공개적·비공개적 발행, 외채 도입 등 방식으로 용자할 수 있다.

제19조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법률·행정법규·지방성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정(法定) 권한 내에서 비용 감면, 토지이용 지표 보장, 공공서비스 제공 등 방면의 외국인투자 촉진 및 원활화 정책 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제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 및 원활화 정책 조치는 질적 성장 촉진을 지향하고 경제적·사회적·생태적 효과와 이익에 유익하며 외국인투자 환경의 지속적인 최적화에 유익하여야 한다.

제20조 유관 주관부서는 외국인투자 지침을 작성하고 공포하여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서비스와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지침은 투자환경 안내, 외국인투자 업무처리지침, 투자 프로젝트 정보 및 관련 데이터 정보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적시에 갱신이 이뤄져야 한다.

제 3 장 투자 보호

제21조 국가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징수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특수 상황에서 국가가 공공이익의 수요로 인해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징수를 실시하는 경우 법정(法定) 절차에 따라, 비(非)차별적인 방식으로, 피징수 투자의 시장가치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징수 결정에 불복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출자·이윤·자본수익·자산처분소득, 취득하는 지적재산권사용료, 법에 의거하여 취득하는 보상금·배상금, 청산소득 등은 법에 의거하여 위안화 또는 외화로 자유롭게 국내로 입금하거나 해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그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불법으로 통화의 종류, 액수 및 국내입금·해외송금의 빈도 등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국적 종업원과 홍콩·마카오·타이완 출신 종업원의 급여소득 및 기타 합법적인 소득은 법에 따라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3조 국가는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집행(執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지적재산권 신속 협동 보호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하고

지적재산권 분쟁 다원화 해결 제도를 완비하며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한다.

표준 제정 과정이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특허와 연관된 경우 표준연관특허 관련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 행정기관(법률·법규의 수권으로 공공사무 관리 직능을 담당하는 조직 포함, 아래도 같음)과 그 직원은 행정허가·행정검사·행정처벌·행정강제를 실시하거나 기타 행정 수단으로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기업에게 기술이전을 강요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행정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이행함에 있어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기업의 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직책 이행에 필수적인 범위로 한정하고 접근 권한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하며 직책 이행과 무관한 자는 관련 자료·정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기관은 내부관리제도를 수립·완비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직책 이행 중에 알게된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기업의 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기타 행정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경우 정보에 포함된 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외국인투자자와 연관된 규범성문건을 제정함에 있어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합법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기업은 행정행위의 근거로 인용된 국무원 부서와 지방 인민정부 및 그 부서가 제정한 규범성문건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판단하에 법에 의거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 제기 시 해당 규범성문건에 대한 심사도 같이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 외국인투자법 제 25 조에서 정책 약속이라 함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가 법정(法定) 권한 내에서 약속한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기업의 해당 지역 투자에 적용되는 지원 정책, 누릴 수 있는 혜택 및 편리 조건 등에 대한 서면 승낙을 지칭한다. 정책 약속의 내용은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8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기업에게 한 정책 약속과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기업과 체결한 제반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행정구획 조정, 정부 지도부 교체, 기구 또는 직능 조정 및 관련 담당자 교체 등을 이유로 약정을 어기고 계약을 파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이익·사회공공이익의 수요로 정책 약속, 계약의 약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정(法定)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기업에게 초래된 손실을 적시적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29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공개성·투명성·효율성·편리성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불만신고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반영하는 문제를 적시에 처리하고 관련 정책 조치를 조율 및 보완하여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불만신고 업무 다부서 연석회의 제도를 수립하여 중앙 차원의 외국인투자기업 불만신고 업무를 조율하고 추진하며 지방의 외국인투자기업 불만신고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담당부서 또는 담당기구를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의 불만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 또는 기구는 불만신고 업무규칙을 보완하고 불만신고 방식을 완비하며 불만신고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불만신고 업무규칙, 불만신고 방식, 불만신고 처리기한은 외부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30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행정기관 또는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는 판단하에 외국인투자기업 불만신고 업무 메커니즘을 통하여 조율·해결을 신청하는 경우 유관 방면은 조율 진행 시 피신청 행정기관과 그 직원에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신청 행정기관과 그 직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조율 결과는 서면 형식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문제의 조율·해결을 신청하는 경우 그가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1조 외국인투자기업 불만신고 업무 메커니즘을 통하여 문제를 보고하거나 문제의 조율·해결을 신청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에 대하여 그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제압 또는 보복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외국인투자기업 불만신고 업무 메커니즘 이외의 기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정부와 그 유관부서에 문제를 반영할 수 있다.

제32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상회·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은 자의에 의해 상회·협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며 그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이를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상회·협회는 법률·법규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업계의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업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회원기업을 상대로 정보 자문, 홍보·교육, 시장 개척, 경제무역 교류, 권익 보호, 분쟁 처리 등 방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는 상회·협회가 법률·법규 및 정관에 따라 관련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 4 장 투자 관리

제33조 외국인투자자는 네거티브리스트에 수록된 외국인투자 금지 분야에 투자할 수 없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수록된 투자 제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는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지분비율 요구, 고급관리인원 요구 등 제한적 특별관리조치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4조 유관 주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가 진행하고자 하는 네거티브리스트에 수록된 분야에 대한 투자가 네거티브리스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한 경우 허가, 기업등기·등록 등 관련 사항의 처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 승인(核准)의 경우 관련 승인(核准) 사항의 처리를 거절할 수 있다.

유관 주관부서는 네거티브리스트 규정 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자가 네거티브리스트에 수록된 투자 금지 분야에 투자하였음을 발견하였거나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활동이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제한적 특별관리조치에 위배됨을 발견한 경우 외국인투자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 외국인투자자가 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는 업종·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허가 실시를 담당하는 유관 주관부서는 내자(內資)와 일치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허가신청을 심사하여야 하며 허가조건·신청서류·심사절차·심사기한 등 방면에서 외국인투자자에게 차별적인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허가 실시를 담당하는 유관 주관부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심사비준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심사비준 효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관련 조건과 요구에 부합하는 허가사항은 유관 규정에 따라 고지·승낙제를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 외국인투자가 투자 프로젝트 허가(核准)·비안(備案)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7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기·등록은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 또는 그가 수권한 지방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그가 수권한 시장감독관리부서의 명단을 공포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자본은 위안화로 표시하거나 자유환전이 가능한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제38조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등기시스템 및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하여 투자 정보를 상무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시장감독관리부서는 관련 업무 시스템의 연결과 업무의 연결을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하여 투자 정보 제출에 관한 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 외국인투자 정보 보고의 내용, 범위, 빈도와 구체적인 절차는 국무원 상무주 관부서가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 등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필요성·효율성·편리성의 원칙에 따라 확정하고 공포한다. 상무주관부서와 기타 유관부서는 정보 공유를 강화 하여야 하며 부서간 정보 공유를 통해 획득이 가능한 투자 정보를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중복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출하는 투자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벽 해야 한다.

제40조 국가는 외국인투자 안전심사 제도를 구축하며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안전심사를 실시한다.

제 5 장 법률책임

제41조 정부와 그 유관부서 및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법규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 (1) 관련 정책을 제정하거나 실시함에 있어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기업과 내자기 업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법을 어기고 외국인투자기업이 표준 제개정 업무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제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강제성 표준보다 엄격한 기술요구를 적용하는 경우
- (3) 법을 어기고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입금·해외송금을 제한하는 경우
- (4)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기업에게 한 정책 약속 또는 법에 의거하 여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기업과 체결한 제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 정 권한을 벗어나 정책 약속을 하거나 정책 약속의 내용이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2조 정부조달의 구매자·구매대리기가 불합리적인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경우 정부조달법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의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낙찰, 거래 성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정부조달법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정부조달감독관리부서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불만신고에 대하여 처리기한이 경과될 때 까지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제43조 행정기관과 그 직원이 행정 수단을 이용하여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제 6 장 부 칙

제44조 외국인투자법이 시행되기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약칭)은 외국인투자법 시행 후 5 년 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의 조직형태·조직기구 등을 조정하고 법에 따라 변경등기 수속을 이행할 수 있으며 기존의 기업조직형태·조직기구 등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법에 따라 조직형태·조직기구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변경등기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해당 기업이 신청하는 기타 등기사항의 처리를 보류하며 관련 상황을 공시한다.

제45조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형태·조직기구 등 변경등기 수속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규정하여 공포한다.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변경등기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변경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기업이 변경등기 수속을 이행하는데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6조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형태·조직기구 등이 법에 따라 조정된 후 기존 합영·합작 당사자들이 계약에 약정한 지분 또는 권익 양도 방법, 수익 배당 방법, 잔여자산 분배 방법 등은 계속해서 약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7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투자는 외국인투자법과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48조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 투자자의 내륙지역 투자는 외국인투자법과 이 조례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국무원의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타이완(臺灣) 지역 투자자의 대륙지역 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臺灣)동포투자 보호법>(이하 '타이완(臺灣)동포투자 보호법'으로 약칭) 및 그 실시세칙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타이완(臺灣)동포투자 보호법 및 그 실시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인투자법과 이 조례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해외에 정주 중인 중국 공민의 중국 내 투자는 외국인투자법과 이 조례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국무원의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49조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중외합자경영기업의 합영기한에 관한 임시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은 동시에 폐지한다.

2020 년 1 월 1 일 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이 외국인투자법 및 이 조례와
불일치한 경우 외국인투자법과 이 조례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

법석[2019]20 호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이 2019년 12월 16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 1787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9년 12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국내외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며 안정적이고 공평·투명하며 법치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판 실천과 결부시켜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평등 주체간의 투자계약 분쟁 사건의 법률적용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제1조 이 해석에서 투자계약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자 즉 외국 국적의 자연인,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의 직간접적인 중국 내 투자를 통해 형성된 관련 계약을 지칭하며 외국인투자기업설립계약, 주식양수도계약, 지분양수도계약, 재산지분 또는 기타 유사 권익 양수도계약, 신규건설 프로젝트 계약 등 계약을 포함한다.

외국인투자자가 증여, 재산분할, 기업합병, 기업분할 등 방식으로 해당 권익을 취득함에 있어 발생한 계약 분쟁은 이 해석을 적용받는다.

제2조 외국인투자법 제 4 조에 규정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수록된 분야를 제외한 기타 분야에서 형성된 투자계약에 대해 당사자가 유관 행정주관부서의 계약 비준·등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 또는 효력 미발생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전항에 규정한 투자계약이 외국인투자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으나 외국인투자법 시행 시작 시점에 인민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을 효력을 판단한다.

제3조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수록된 투자금지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당사자가 투자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제4조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수록된 투자제한 분야에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당사자가 외국인투자 제한적 특별관리조치 위반을 이유로 투자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특별관리조치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당사자가 전항에 규정한 투자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제5조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조정으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가 더이상 투자금지 분야 또는 투자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사자가 투자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제6조 인민법원은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 투자자 및 해외 이주 중국 국민의 내륙지역 투자와 및 타이완지역 투자자의 대륙지역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이 해석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이 해석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해석이 시행되기 전에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사법해석이 이 해석과 불일치한 경우 이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

(2019年3月15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二次会议通过)

目 录

第一章 总 则

第二章 投资促进

第三章 投资保护

第四章 投资管理

第五章 法律责任

第六章 附 则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进一步扩大对外开放,积极促进外商投资,保护外商投资合法权益,规范外商投资管理,推动形成全面开放新格局,促进社会主义市场经济健康发展,根据宪法,制定本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以下简称中国境内)的外商投资,适用本法。

本法所称外商投资,是指外国的自然人、企业或者其他组织(以下称外国投资者)直接或者间接在中国境内进行的投资活动,包括下列情形:

- (一)外国投资者单独或者与其他投资者共同在中国境内设立外商投资企业;
- (二)外国投资者取得中国境内企业的股份、股权、财产份额或者其他类似权益;
- (三)外国投资者单独或者与其他投资者共同在中国境内投资新建项目;
- (四)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规定的其他方式的投资。

本法所称外商投资企业,是指全部或者部分由外国投资者投资,依照中国法律在中国境内经登记注册设立的企业。

第三条 国家坚持对外开放的基本国策,鼓励外国投资者依法在中国境内投资。

国家实行高水平投资自由化便利化政策,建立和完善外商投资促进机制,营造稳定、透

明、可预期和公平竞争的市场环境。

第四条 国家对外商投资实行准入前国民待遇加负面清单管理制度。

前款所称准入前国民待遇，是指在投资准入阶段给予外国投资者及其投资不低于本国投资者及其投资的待遇；所称负面清单，是指国家规定在特定领域对外商投资实施的准入特别管理措施。国家对负面清单之外的外商投资，给予国民待遇。

负面清单由国务院发布或者批准发布。

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协定对外国投资者准入待遇有更优惠规定的，可以按照相关规定执行。

第五条 国家依法保护外国投资者在中国境内的投资、收益和其他合法权益。

第六条 在中国境内进行投资活动的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应当遵守中国法律法规，不得危害中国国家安全、损害社会公共利益。

第七条 国务院商务主管部门、投资主管部门按照职责分工，开展外商投资促进、保护和管理的工作；国务院其他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外商投资促进、保护和管理的相关工作。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依照法律法规和本级人民政府确定的职责分工，开展外商投资促进、保护和管理的工作。

第八条 外商投资企业职工依法建立工会组织，开展工会活动，维护职工的合法权益。外商投资企业应当为本企业工会提供必要的活动条件。

第二章 投资促进

第九条 外商投资企业依法平等适用国家支持企业发展的各项政策。

第十条 制定与外商投资有关的法律、法规、规章，应当采取适当方式征求外商投资企业的意见和建议。

与外商投资有关的规范性文件、裁判文书等，应当依法及时公布。

第十一条 国家建立健全外商投资服务体系，为外国投资者和外商投资企业提供法律法规、政策措施、投资项目信息等方面的咨询和服务。

第十二条 国家与其他国家和地区、国际组织建立多边、双边投资促进合作机制，加强投资领域的国际交流与合作。

第十三条 国家根据需要，设立特殊经济区域，或者在部分地区实行外商投资试验性政策措施，促进外商投资，扩大对外开放。

第十四条 国家根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的需要，鼓励和引导外国投资者在特定行业、领域、地区投资。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可以依照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的规定享受优惠待遇。

第十五条 国家保障外商投资企业依法平等参与标准制定工作，强化标准制定的信息公开和社会监督。

国家制定的强制性标准平等适用于外商投资企业。

第十六条 国家保障外商投资企业依法通过公平竞争参与政府采购活动。政府采购依法对外商投资企业在中国境内生产的产品、提供的服务平等对待。

第十七条 外商投资企业可以依法通过公开发行股票、公司债券等证券和其他方式进行融资。

第十八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可以根据法律、行政法规、地方性法规的规定，在法定权限内制定外商投资促进和便利化政策措施。

第十九条 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按照便利、高效、透明的原则，简化办事程序，提高办事效率，优化政务服务，进一步提高外商投资服务水平。

有关主管部门应当编制和公布外商投资指引，为外国投资者和外商投资企业提供服务和便利。

第三章 投资保护

第二十条 国家对外国投资者的投资不实行征收。

在特殊情况下，国家为了公共利益的需要，可以依照法律规定对外国投资者的投资实行征收或者征用。征收、征用应当依照法定程序进行，并及时给予公平、合理的补偿。

第二十一条 外国投资者在中国境内的出资、利润、资本收益、资产处置所得、知识产权许可使用费、依法获得的补偿或者赔偿、清算所得等，可以依法以人民币或者外汇自由汇入、汇出。

第二十二条 国家保护外国投资者和外商投资企业的知识产权，保护知识产权权利人和相关权利人的合法权益；对知识产权侵权行为，严格依法追究法律责任。

国家鼓励在外商投资过程中基于自愿原则和商业规则开展技术合作。技术合作的条件由投资各方遵循公平原则平等协商确定。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不得利用行政手段强制转让技术。

第二十三条 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对于履行职责过程中知悉的外国投资者、外商投资

企业的商业秘密，应当依法予以保密，不得泄露或者非法向他人提供。

第二十四条 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制定涉及外商投资的规范性文件，应当符合法律法规的规定；没有法律、行政法规依据的，不得减损外商投资企业的合法权益或者增加其义务，不得设置市场准入和退出条件，不得干预外商投资企业的正常生产经营活动。

第二十五条 地方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履行向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依法作出的政策承诺以及依法订立的各类合同。

因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需要改变政策承诺、合同约定的，应当依照法定权限和程序进行，并依法对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因此受到的损失予以补偿。

第二十六条 国家建立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机制，及时处理外商投资企业或者其投资者反映的问题，协调完善相关政策措施。

外商投资企业或者其投资者认为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的行政行为侵犯其合法权益的，可以通过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机制申请协调解决。

外商投资企业或者其投资者认为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的行政行为侵犯其合法权益的，除依照前款规定通过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机制申请协调解决外，还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提起行政诉讼。

第二十七条 外商投资企业可以依法成立和自愿参加商会、协会。商会、协会依照法律法规和章程的规定开展相关活动，维护会员的合法权益。

第四章 投资管理

第二十八条 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规定禁止投资的领域，外国投资者不得投资。

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规定限制投资的领域，外国投资者进行投资应当符合负面清单规定的条件。

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以外的领域，按照内外资一致的原则实施管理。

第二十九条 外商投资需要办理投资项目核准、备案的，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第三十条 外国投资者在依法需要取得许可的行业、领域进行投资的，应当依法办理相关许可手续。

有关主管部门应当按照与内资一致的条件和程序，审核外国投资者的许可申请，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第三十一条 外商投资企业的组织形式、组织机构及其活动准则，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等法律的规定。

第三十二条 外商投资企业开展生产经营活动,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有关劳动保护、社会保险的规定,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办理税收、会计、外汇等事宜,并接受相关主管部门依法实施的监督检查。

第三十三条 外国投资者并购中国境内企业或者以其他方式参与经营者集中的,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的规定接受经营者集中审查。

第三十四条 国家建立外商投资信息报告制度。外国投资者或者外商投资企业应当通过企业登记系统以及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商务主管部门报送投资信息。

外商投资信息报告的内容和范围按照确有必要原则确定;通过部门信息共享能够获得的投资信息,不得再行要求报送。

第三十五条 国家建立外商投资安全审查制度,对影响或者可能影响国家安全的外商投资进行安全审查。

依法作出的安全审查决定为最终决定。

第五章 法律责任

第三十六条 外国投资者投资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规定禁止投资的领域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停止投资活动,限期处分股份、资产或者采取其他必要措施,恢复到实施投资前的状态;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外国投资者的投资活动违反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规定的限制性准入特别管理措施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采取必要措施满足准入特别管理措施的要求;逾期不改正的,依照前款规定处理。

外国投资者的投资活动违反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规定的,除依照前两款规定处理外,还应当依法承担相应的法律责任。

第三十七条 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违反本法规定,未按照外商投资信息报告制度的要求报送投资信息的,由商务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

第三十八条 对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违反法律、法规的行为,由有关部门依法查处,并按照国家有关规定纳入信用信息系统。

第三十九条 行政机关工作人员在外商投资促进、保护和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或者泄露、非法向他人提供履行职责过程中知悉的商业秘密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六章 附 则

第四十条 任何国家或者地区在投资方面对中华人民共和国采取歧视性的禁止、限制或者其他类似措施的，中华人民共和国可以根据实际情况对该国家或者该地区采取相应的措施。

第四十一条 对外国投资者在中国境内投资银行业、证券业、保险业等金融行业，或者在证券市场、外汇市场等金融市场进行投资的管理，国家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四十二条 本法自2020年1月1日起施行。《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同时废止。

本法施行前依照《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设立的外商投资企业，在本法施行后五年内可以继续保留原企业组织形式等。具体实施办法由国务院规定。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实施条例

国务院令 第723号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实施条例》已经2019年12月12日国务院第74次常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20年1月1日起施行。

总理 李克强

2019年12月26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以下简称外商投资法），制定本条例。

第二条 国家鼓励和促进外商投资，保护外商投资合法权益，规范外商投资管理，持续优化外商投资环境，推进更高水平对外开放。

第三条 外商投资法第二条第二款第一项、第三项所称其他投资者，包括中国的自然人在内。

第四条 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以下简称负面清单）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会同国务院商务主管部门等有关部门提出，报国务院发布或者报国务院批准后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商务主管部门发布。

国家根据进一步扩大对外开放和经济社会发展需要，适时调整负面清单。调整负面清单的程序，适用前款规定。

第五条 国务院商务主管部门、投资主管部门以及其他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密切配合、相互协作，共同做好外商投资促进、保护和管理工作的。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对外商投资促进、保护和管理工作的组织领导，支持、督促有关部门依照法律法规和职责分工开展外商投资促进、保护和管理工作的，及时协调、解决外商投资促进、保护和管理工作中的重大问题。

第二章 投资促进

第六条 政府及其有关部门在政府资金安排、土地供应、税费减免、资质许可、标准制定、项目申报、人力资源政策等方面，应当依法平等对待外商投资企业和内资企业。

政府及其有关部门制定的支持企业发展的政策应当依法公开；对政策实施中需要由企业申请办理的事项，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公开申请办理的条件、流程、时限等，并在审核中依法平等对待外商投资企业和内资企业。

第七条 制定与外商投资有关的行政法规、规章、规范性文件，或者政府及其有关部门起草与外商投资有关的法律、地方性法规，应当根据实际情况，采取书面征求意见以及召开座谈会、论证会、听证会等多种形式，听取外商投资企业和有关商会、协会等方面的意见和建议；对反映集中或者涉及外商投资企业重大权利义务问题的意见和建议，应当通过适当方式反馈采纳的情况。

与外商投资有关的规范性文件应当依法及时公布，未经公布的不得作为行政管理依据。与外商投资企业生产经营活动密切相关的规范性文件，应当结合实际，合理确定公布到施行之间的时间。

第八条 各级人民政府应当按照政府主导、多方参与的原则，建立健全外商投资服务体系，不断提升外商投资服务能力和水平。

第九条 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通过政府网站、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集中列明有关外商投资的法律、法规、规章、规范性文件、政策措施和投资项目信息，并通过多种途径和方式加强宣传、解读，为外国投资者和外商投资企业提供咨询、指导等服务。

第十条 外商投资法第十三条所称特殊经济区域，是指经国家批准设立、实行更大力度的对外开放政策措施的特定区域。

国家在部分地区实行的外商投资试验性政策措施，经实践证明可行的，根据实际情况在其他地区或者全国范围内推广。

第十一条 国家根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需要，制定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列明鼓励和引导外国投资者投资的特定行业、领域、地区。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会同国务院商务主管部门等有关部门拟订，报国务院批准后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商务主管部门发布。

第十二条 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可以依照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的规定，享受财政、税收、金融、用地等方面的优惠待遇。

外国投资者以其在中国境内的投资收益在中国境内扩大投资的，依法享受相应的优惠待遇。

第十三条 外商投资企业依法和内资企业平等参与国家标准、行业标准、地方标准和团体标准的制定、修订工作。外商投资企业可以根据需要自行制定或者与其他企业联合制定企业标准。

外商投资企业可以向标准化行政主管部门和有关行政主管部门提出标准的立项建议，在标准立项、起草、技术审查以及标准实施信息反馈、评估等过程中提出意见和建议，并按照规定承担标准起草、技术审查的相关工作以及标准的外文翻译工作。

标准化行政主管部门和有关行政主管部门应当建立健全相关工作机制，提高标准制定、修订的透明度，推进标准制定、修订全过程信息公开。

第十四条 国家制定的强制性标准对外商投资企业和内资企业平等适用，不得专门针对外商投资企业适用高于强制性标准的技术要求。

第十五条 政府及其有关部门不得阻挠和限制外商投资企业自由进入本地区和本行业的政府采购市场。

政府采购的采购人、采购代理机构不得在政府采购信息发布、供应商条件确定和资格审查、评标标准等方面，对外商投资企业实行差别待遇或者歧视待遇，不得以所有制形式、组织形式、股权结构、投资者国别、产品或者服务品牌以及其他不合理的条件对供应商予以限定，不得对外商投资企业在中国境内生产的产品、提供的服务和内资企业区别对待。

第十六条 外商投资企业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以下简称政府采购法）及其实施条例的规定，就政府采购活动事项向采购人、采购代理机构提出询问、质疑，向政府采购监督管理部门投诉。采购人、采购代理机构、政府采购监督管理部门应当在规定的时限内作出答复或者处理决定。

第十七条 政府采购监督管理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加强对政府采购活动的监督检查，依法纠正和查处对外商投资企业实行差别待遇或者歧视待遇等违法违规行为。

第十八条 外商投资企业可以依法在中国境内或者境外通过公开发行股票、公司债券等证券，以及公开或者非公开发行其他融资工具、借用外债等方式进行融资。

第十九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可以根据法律、行政法规、地方性法规的规定，在法定权限内制定费用减免、用地指标保障、公共服务提供等方面的外商投资促进和便利化政策措施。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制定外商投资促进和便利化政策措施，应当以推动高质量发展为导向，有利于提高经济效益、社会效益、生态效益，有利于持续优化外商投资环境。

第二十条 有关主管部门应当编制和公布外商投资指引，为外国投资者和外商投资企业提供服务和便利。外商投资指引应当包括投资环境介绍、外商投资办事指南、投资项目信息以及相关数据信息等内容，并及时更新。

第三章 投资保护

第二十一条 国家对外国投资者的投资不实行征收。

在特殊情况下，国家为了公共利益的需要依照法律规定对外国投资者的投资实行征收的，应当依照法定程序、以非歧视性的方式进行，并按照被征收投资的市场价值及时给予补偿。

外国投资者对征收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第二十二条 外国投资者在中国境内的出资、利润、资本收益、资产处置所得、取得的知识产权许可使用费、依法获得的补偿或者赔偿、清算所得等，可以依法以人民币或者外汇自由汇入、汇出，任何单位和个人不得违法对币种、数额以及汇入、汇出的频次等进行限制。

外商投资企业的外籍职工和香港、澳门、台湾职工的工资收入和其他合法收入，可以依法自由汇出。

第二十三条 国家加大对知识产权侵权行为的惩处力度，持续强化知识产权执法，推动建立知识产权快速协同保护机制，健全知识产权纠纷多元化解机制，平等保护外国投资者和外商投资企业的知识产权。

标准制定中涉及外国投资者和外商投资企业专利的，应当按照标准涉及专利的有关管理规定办理。

第二十四条 行政机关（包括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下同）及其工作人员不得利用实施行政许可、行政检查、行政处罚、行政强制以及其他行政手段，强制或者变相强制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转让技术。

第二十五条 行政机关依法履行职责，确需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提供涉及商业秘密的材料、信息的，应当限定在履行职责所必需的范围内，并严格控制知悉范围，与履行职责无关的人员不得接触有关材料、信息。

行政机关应当建立健全内部管理制度，采取有效措施保护履行职责过程中知悉的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的商业秘密；依法需要与其他行政机关共享信息的，应当对信息中含有的商业秘密进行保密处理，防止泄露。

第二十六条 政府及其有关部门制定涉及外商投资的规范性文件，应当按照国务院的规定进行合法性审核。

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认为行政行为所依据的国务院部门和地方人民政府及其部门制定的规范性文件不合法，在依法对行政行为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时，可以一并请求对该规范性文件进行审查。

第二十七条 外商投资法第二十五条所称政策承诺，是指地方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在法定权限内，就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在本地区投资所适用的支持政策、享受的优惠待遇和便利条件等作出的书面承诺。政策承诺的内容应当符合法律、法规规定。

第二十八条 地方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履行向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依法作出的政策承诺以及依法订立的各类合同，不得以行政区划调整、政府换届、机构或者职能调整以及相关责任人更替等为由违约毁约。因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需要改变政策承诺、合同约定的，应当依照法定权限和程序进行，并依法对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因此受到的损失及时予以公平、合理的补偿。

第二十九条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按照公开透明、高效便利的原则，建立健全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机制，及时处理外商投资企业或者其投资者反映的问题，协调完善相关政策措施。

国务院商务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建立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部际联席会议制度，协调、推动中央层面的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对地方的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进行指导和监督。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指定部门或者机构负责受理本地区外商投资企业或者其投资者的投诉。

国务院商务主管部门、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指定的部门或者机构应当完善投诉工作规则、健全投诉方式、明确投诉处理时限。投诉工作规则、投诉方式、投诉处理时限应当对外公布。

第三十条 外商投资企业或者其投资者认为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的行政行为侵犯其合法权益，通过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机制申请协调解决的，有关方面进行协调时可以向被申请的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了解情况，被申请的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应当予以配合。协调结果应当以书面形式及时告知申请人。

外商投资企业或者其投资者依照前款规定申请协调解决有关问题的，不影响其依法申请行政复议、提起行政诉讼。

第三十一条 对外商投资企业或者其投资者通过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机制反映或者申请协调解决问题，任何单位和个人不得压制或者打击报复。

除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机制外，外商投资企业或者其投资者还可以通过其他合法途径向政府及其有关部门反映问题。

第三十二条 外商投资企业可以依法成立商会、协会。除法律、法规另有规定外，外商投资企业有权自主决定参加或者退出商会、协会，任何单位和个人不得干预。

商会、协会应当依照法律法规和章程的规定，加强行业自律，及时反映行业诉求，为会员提供信息咨询、宣传培训、市场拓展、经贸交流、权益保护、纠纷处理等方面的服务。

国家支持商会、协会依照法律法规和章程的规定开展相关活动。

第四章 投资管理

第三十三条 负面清单规定禁止投资的领域，外国投资者不得投资。负面清单规定限制投资的领域，外国投资者进行投资应当符合负面清单规定的股权要求、高级管理人员要求等限制性准入特别管理措施。

第三十四条 有关主管部门在依法履行职责过程中，对外国投资者拟投资负面清单内领域，但不符合负面清单规定的，不予办理许可、企业登记注册等相关事项；涉及固定资产投资项目核准的，不予办理相关核准事项。

有关主管部门应当对负面清单规定执行情况加强监督检查,发现外国投资者投资负面清单规定禁止投资的领域,或者外国投资者的投资活动违反负面清单规定的限制性准入特别管理措施的,依照外商投资法第三十六条的规定予以处理。

第三十五条 外国投资者在依法需要取得许可的行业、领域进行投资的,除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外,负责实施许可的有关主管部门应当按照与内资一致的条件和程序,审核外国投资者的许可申请,不得在许可条件、申请材料、审核环节、审核时限等方面对外国投资者设置歧视性要求。

负责实施许可的有关主管部门应当通过多种方式,优化审批服务,提高审批效率。对符合相关条件和要求的许可事项,可以按照有关规定采取告知承诺的方式办理。

第三十六条 外商投资需要办理投资项目核准、备案的,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第三十七条 外商投资企业的登记注册,由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或者其授权的地方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依法办理。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公布其授权的市场监督管理部门名单。

外商投资企业的注册资本可以用人民币表示,也可以用可自由兑换货币表示。

第三十八条 外国投资者或者外商投资企业应当通过企业登记系统以及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商务主管部门报送投资信息。国务院商务主管部门、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做好相关业务系统的对接和工作衔接,并为外国投资者或者外商投资企业报送投资信息提供指导。

第三十九条 外商投资信息报告的内容、范围、频次和具体流程,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会同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等有关部门按照确有必要、高效便利的原则确定并公布。商务主管部门、其他有关部门应当加强信息共享,通过部门信息共享能够获得的投资信息,不得再行要求外国投资者或者外商投资企业报送。

外国投资者或者外商投资企业报送的投资信息应当真实、准确、完整。

第四十条 国家建立外商投资安全审查制度,对影响或者可能影响国家安全的外商投资进行安全审查。

第五章 法律责任

第四十一条 政府和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依法依规追究责任:

- (一) 制定或者实施有关政策不依法平等对待外商投资企业和内资企业;
- (二) 违法限制外商投资企业平等参与标准制定、修订工作,或者专门针对外商投资企业适用高于强制性标准的技术要求;
- (三) 违法限制外国投资者汇入、汇出资金;
- (四) 不履行向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依法作出的政策承诺以及依法订立的各类合同,超出法定权限作出政策承诺,或者政策承诺的内容不符合法律、法规规定。

第四十二条 政府采购的采购人、采购代理机构以不合理的条件对外商投资企业实行差别待遇或者歧视待遇的，依照政府采购法及其实施条例的规定追究其法律责任；影响或者可能影响中标、成交结果的，依照政府采购法及其实施条例的规定处理。

政府采购监督管理部门对外商投资企业的投诉逾期未作处理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第四十三条 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利用行政手段强制或者变相强制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转让技术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第六章 附 则

第四十四条 外商投资法施行前依照《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设立的外商投资企业（以下称现有外商投资企业），在外商投资法施行后 5 年内，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等法律的规定调整其组织形式、组织机构等，并依法办理变更登记，也可以继续保留原企业组织形式、组织机构等。

自 2025 年 1 月 1 日起，对未依法调整组织形式、组织机构等并办理变更登记的现有外商投资企业，市场监督管理部门不予办理其申请的其他登记事项，并将相关情形予以公示。

第四十五条 现有外商投资企业办理组织形式、组织机构等变更登记的具体事宜，由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规定并公布。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加强对变更登记工作的指导，负责办理变更登记的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通过多种方式优化服务，为企业办理变更登记提供便利。

第四十六条 现有外商投资企业的组织形式、组织机构等依法调整后，原合营、合作各方在合同中约定的股权或者权益转让办法、收益分配办法、剩余财产分配办法等，可以继续按照约定办理。

第四十七条 外商投资企业在中国境内投资，适用外商投资法和本条例的有关规定。

第四十八条 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投资者在内地投资，参照外商投资法和本条例执行；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另有规定的，从其规定。

台湾地区投资者在大陆投资，适用《中华人民共和国台湾同胞投资保护法》（以下简称台湾同胞投资保护法）及其实施细则的规定；台湾同胞投资保护法及其实施细则未规定的事项，参照外商投资法和本条例执行。

定居在国外的中国公民在中国境内投资，参照外商投资法和本条例执行；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四十九条 本条例自 2020 年 1 月 1 日起施行。《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中外合资经营企业合营期限暂行规定》、《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同时废止。

2020 年 1 月 1 日前制定的有关外商投资的规定与外商投资法和本条例不一致的，以外商投资法和本条例的规定为准。

最高人民法院

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若干问题的解释

法释〔2019〕20号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若干问题的解释》已于2019年12月16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787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20年1月1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2019年12月26日

为正确适用《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依法平等保护中外投资者合法权益，营造稳定、公平、透明的法治化营商环境，结合审判实践，就人民法院审理平等主体之间的投资合同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作出如下解释。

第一条 本解释所称投资合同，是指外国投资者即外国的自然人、企业或者其他组织因直接或者间接在中国境内进行投资而形成的相关协议，包括设立外商投资企业合同、股份转让合同、股权转让合同、财产份额或者其他类似权益转让合同、新建项目合同等协议。

外国投资者因赠与、财产分割、企业合并、企业分立等方式取得相应权益所产生的合同纠纷，适用本解释。

第二条 对外商投资法第四条所指的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之外的领域形成的投资合同，当事人以合同未经有关行政主管部门批准、登记为由主张合同无效或者未生效的，人民法院不予支持。

前款规定的投资合同签订于外商投资法施行前，但人民法院在外商投资法施行时尚未作出生效裁判的，适用前款规定认定合同的效力。

第三条 外国投资者投资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规定禁止投资的领域，当事人主张投资合同无效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四条 外国投资者投资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规定限制投资的领域，当事人以违反限制性准入特别管理措施为由，主张投资合同无效的，人民法院应予支持。

人民法院作出生效裁判前，当事人采取必要措施满足准入特别管理措施的要求，当事人主张前款规定的投资合同有效的，应予支持。

第五条 在生效裁判作出前，因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调整，外国投资者投资不再属于禁止或者限制投资的领域，当事人主张投资合同有效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六条 人民法院审理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投资者、定居在国外的中国公民在内地、台湾地区投资者在大陆投资产生的相关纠纷案件，可以参照适用本解释。

第七条 本解释自 2020 年 1 月 1 日起施行。

本解释施行前本院作出的有关司法解释与本解释不一致的，以本解释为准。